

2025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(4차)

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25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을 공고(4차)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17일

강릉시



□ 2025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(4차)

(단위 : 천 원)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담	
12개 사업	-	176,049	7,059	38,231	82,591	48,168	-
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(3차)	6명	1,200	600	144	336	120	◦지원대상: 만51세 이상 관내 여성어업인 ◦지원내용: 특화 건강검진 비용 일부 지원 ◦지원한도: 1인 최대 200천원
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(3차)	34명	5,780	-	1,214	2,832	1,734	◦지원대상: 만20세 ~ 만75세 미만 관내 여성어업인 ◦지원내용: 예방접종(대상포진, 폐렴, 파상풍, 인플루엔자, A형 간염, 백일해 중 택) 비용 일부 지원 ◦지원한도: 1인 170천원 이내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담	
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(4차)	190명	28,298	-	5,667	14,168	8,46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관내 여성어업인 ◦지원내용: 어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일부 지원 ◦지원한도: 인당 150천원 이내
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(3차)	4척	1,394	-	418	697	27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관내 연안자망, 허가, 연근해 통발어업 허가 어선 ◦지원내용: 어구 표지기 구입비용 일부 지원 ◦지원한도: 척당 360천원 이내
연승어업 복어 미끼 지원(4차)	6척	4,000	-	-	2,000	2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복어 조업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◦지원내용: 연안복합어업 허가 어선 미끼 구입비용 일부 지원 ◦지원한도: 척당 2,000천원 이내
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	1개소	8,301	2,480	744	1,736	3,34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◦지원내용: 종자 생산시설 · 장비의 설치 · 교체 · 개선 지원 * 종자 구입비 제외
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	4개소	1,380	-	290	680	4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(내수면어종) 또는 내수면양식업 면허·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(신고)를 받은 자 ◦지원내용: 내수면 수산동물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항생제 및 소독제 구입비 지원 ◦지원한도: 개소당 1백만 원
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	2개소	19,430	-	4,462	10,413	4,55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황태 가공업체 ◦지원내용: 황태 가공 자동화 기자재 구입 * 소모성 자재 제외 ◦지원한도: 개소당 16,000천원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					비고
		계	국비	도비	시비	자담	
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	2개소	19,802	-	5,941	13,861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수산물관련 단체, 가공업체 등 ◦지원내용: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, 제품 홍보 플랫폼 구축 등 ◦지원한도: 개소당 10,000천원
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	1척	11,570	3,471	3,471	-	4,62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연근해어업(근해, 연안, 구획)허가 어업인 ◦지원품목: 어선의 기관, 고효율 등(燈), 에너지 유류 절감 장치, 탄소배출 절감 매연저감장치 등 ◦지원금액: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 단가 (단, 500마력 이상으로 대체 시 국비 20%, 시비 30%, 자부담 50%)
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	1척	1,694	508	508	-	67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연근해어업 허가받은 어업인(어장, 양식장 관리선 포함) ◦지원내용: VHF-DSC, 자동소화 시스템, 구명조끼(구명의포함), V-Pass, 양망기 긴급정지장치, 그 밖의 어선설비(전기, 구명, 소방, 항해, 무선설비 등) ◦지원단가: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공동구매 단가
정망기 설치 지원	3척	73,200	-	15,372	35,868	21,9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지원대상: 연근해 채낚기어업 허가 어선 ◦지원내용 및 기준: 어업용 그물정리기(정망기) 지원 (척당 25,000천원 이내)

※ 신청자가 많아 경합 시 사업별 우선순위 의거 선정

□ 사업 신청요령

- 신청기간: 2025. 10. 17.(금) ~ 10. 31.(금)
- 신청대상: 어업허가(면허) 어선, 양식어가, 수산물가공업체 등(사업별 해당자)
- 신청방법: 방문 및 우편접수(해양수산과, 주문진읍사무소, 강릉시수협, 동해시수협)
※ 2024년 장비사업 예비순위자도 2025년 장비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제출서류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선적증서, 어선검사증서 등
※ 사업별 사업신청서 서식 참고하여 구비서류 포함하여 제출
- 문 의 처: 수산정책 분야(☎033-640-5374), 어선장비 분야(☎033-640-5376),
양식·유통가공 분야(☎033-640-5378)

□ 신청자격

- 「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(국비지원)」, 「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(도비지원)」 및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함

□ 지원 제외대상

【 공통사항 】

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(단체 포함) 및 해당어선 ※ 단, “경고” 처분의 어선은 지원 가능
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·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(단체 포함)
- 수산자원조성금 및 각종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,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(단체 포함)
- 어선검사증서 유효 기간이 지난 어선(방치 폐선 포함)
- 연·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
- 공통사항, 사업별 추가사항과 별도로 개별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【 사업별 추가사항 】

- 여성어업인 예방접종 지원
- 1가구 1명 지원 가능

- 국가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예방접종 기 수혜자
- 90톤 이상 어선소유자
- 60일 미만 어업종사자
- 소규모 이상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(수하식 10ha, 살포식 20ha 이상 등)

○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

-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
- '24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수검자
-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

○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

- 1가구 1명 지원 가능
- 90톤 이상 어선소유자
- 60일 미만 어업종사자
- 소규모 이상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(수하식 10ha, 살포식 20ha 이상 등)
- 당해연도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

○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

-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적발 후 처분되어 벌칙·행정처분 등의 미경과 및 제한된 경우
-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한 경우
-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(사업 수행 배제)에 해당하여 지원제한된 경우
-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자(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복수급)

○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약품 지원

-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 제61조에 의한 수산물 안전성조사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양식장

○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

-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
-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 포기자

○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
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- 보조금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자

○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

- 최근 3년 이내(직전 연도말 기준)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
-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* 어선사고,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·유실로 소실되어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예외적 허용 가능
-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
-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
-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
 - * 기 지원받은 기관·장비·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
- 가족(부부 등)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
-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
 - * 어선사고,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·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

○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

- 최근 3년이내(직전 연도말 기준)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
 - ※ "경고"처분의 어선도 불가
-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어선을 계류한 어선
-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
- 가족(부부 등)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
-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
- 지원품목 중 구명조끼를 지원 받고자 하는 낚시어선업 신고자(낚시어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)

○ 정망기 설치 지원

- 최근 2년 이내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·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
-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자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량은 사업집행지침상의 기준 사업량으로 신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사업집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,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사업별 지침은 강릉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- 공고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재산처분(매각·양도·교환, 담보의 제공 등)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어선원부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관련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진행 시 지원(선정)금액 초과분은 전액 자체 부담(자부담분)으로 추진합니다.
- 본 공고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수산정책 분야(☎033-640-5374), 어선장비 분야(☎033-640-5376), 양식·유통가공 분야(☎033-640-5378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